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규정〉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규정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7.

3. 회부연월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 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법률에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학술진흥법」(제15조)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부정행위로서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¹⁾.

또한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1)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1조)에서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²⁾.

□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①위조, ②변조, ③표절, ④부당한 저자표시, ⑤부당한 중복게재, ⑥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⑦그 밖에 통상적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2023년도 국공립·사립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최종판정 현황에 따르면 표절 24건, 부당한 중복게재 13건, 부당한 저자표시 9건, 변조 4건, 위조 3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남.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최종판정 현황(2023년 기준)]

구분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제보 방해	기타	소계
국공립	1	2	7	2	6	—	1	19
사립	2	2	17	7	7	—	3	38
전체	3	4	24	9	13	—	4	57

※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1건당 다수의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국공립 3건, 사립 7건 총 10건이 포함되어 집계됨)
(자료 : 교육부)

□ 최근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법률에 적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제도 상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내용 중 부당한 ‘연구비 수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시 연구비 수령이 제외되는 등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u>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u>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u>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u>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는 현행 제도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중복게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의처
02)6788-5185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의혹 현황

연도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중복 게재	제보 방해	기타	소계
2019년	국공립	1	1	15	50	5	0	8	80
	사립	1	3	25	28	9	0	10	76
	전체	8	5	70	127	25	0	33	268
2020년	국공립	11	7	12	134	7	1	11	183
	사립	9	10	35	165	27	1	4	251
	전체	20	17	47	299	34	2	15	434
2021년	국공립	7	1	18	30	7	0	7	70
	사립	12	4	55	29	21	0	6	127
	전체	19	5	73	59	28	0	13	197
2022년	국공립	4	5	31	43	10	0	7	100
	사립	3	4	45	12	17	0	9	90
	전체	7	9	76	55	27	0	16	190
2023년	국공립	36	42	96	42	82	36	40	374
	사립	5	3	31	17	14	0	7	77
	전체	41	45	127	59	96	36	47	451

※ 연구부정행위 의혹 1건당 다수의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발생할 수 있음(국공립 75건, 사립 12건 이 다수 의혹 조사 건으로 총 87건이 포함되어 집계됨)

2.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최종판정 현황(2023년 기준)

구분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제보 방해	기타	소계
국공립	1	2	7	2	6	—	1	19
사립	2	2	17	7	7	—	3	38
전체	3	4	24	9	13	—	4	57

※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1건당 다수의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국공립 3건, 사립 7건 총 10건이 포함되어 집계됨)